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시행규칙 별표 20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 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4,501대와 1만대 사이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 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그 차량을 1만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이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수와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조 캘리포니아 저배출차량기준 II

규정과 그 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의하여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다음의 저배출차량기준, 저배출차량기준/초저배출차량기준 및 초저배출차량기준을 적용한다.

	총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 평균 배출량 (비메탄유기가스의 마일당 그램) 50,000 마일 / 5 년		
모델 연도	2009	2010	2011년 및 이후
저배출차량 기준	0.075	0.07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C)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저배출차량 기준/ 초저배출 차량기준	0.060	0.060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D)조에 규정된 대로,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
초저배출 차량기준	0.040	≥ 0.038	관련 모델 연도의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A)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II

대한민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고시 및 그 개정에 포함된 요건을 대한민국 영역에서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자기 인증

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을 위한 자기 인증에 관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을 수입 자동차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이 발표된

날 후 최소 2년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1) 그 규정은, 수입 자동차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강제 리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모델에만 적용한다.
- 2)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 이하를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에 포함되고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 3)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중

부 속 서

1. 충돌시 승객보호(정면 및 측면)
2.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3.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
4. 충돌시 앞면창유리 고정성
5. 충돌시 앞면창유리 침입성
6. 머리지지대 강도
7.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8. 견인장치
9. 등화장치
10. 운전자의 시계범위
11. 원동기출력
12. 시계 확보장치
13.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14. 소음방지장치
15. 연료소비율
16.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1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18. 타이어파열
19. 조향성능
20. 속도계
21. 전자파적합성
22. 경음기
23. 좌석 및 그 잠금장치
24. 문열림방지장치
25. 계기판넬 충격흡수
26.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27. 팔걸이 충격흡수
28.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29. 범퍼 충격흡수
30.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31. 조향장치 충격흡수
32. 옆문 강도
33. 천정 강도
34. 차실내장재 연소성
35.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36.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37. 후부안전판 강도
38.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제동능력
39. 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40.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41.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
42. 최고속도제한장치